

## 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- **개념** :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
- **과세대상 법인소득** : 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 **지방세법 제87조**
- **신고·납부기한** :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**지방세법 제103조의23**  
 ※ 연결법인의 경우,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**지방세법 제103조의37**

### 신고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2억원 이하	1%	-
2억 초과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.2%	4,200만원
3천억원 초과	2.5%	9억 4,200만원

###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

01

과세표준

- 「법인세법」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
 ※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,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**지방세법 제103조의19**
- 표준세율(1%, 2%, 2.2%, 2.5%) **지방세법 제103조의20**  
 ※ 조합법인 등은 표준세율 대신 0.9%, 1.2% 적용 **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**
-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(1%, 2%, 4%) **지방세법 제103조의31**
-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등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(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x10%) **지방세법 제103조의31**

---

02

산출세액

- ⊖ **공제·감면세액** :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규정 없음
- ⊕ **가산세** : 「지방세기본법」상 가산세 **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**  
 • 「법인세법」상 가산세의 10% **지방세법 제103조의30**
- ⊕ **추가납부세액** :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% (이자상당가산액, 업무무관자산 비용 및 지급이자, 이월과세 등 추가납부) **지방세법 제103조의30**

---

03

총부담세액

- ⊖ **기납부세액** : 예정신고납부액, 수시부과세액, 특별징수납부세액 **지방세법 제103조의23**  
 ※ 해운기업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제외 (2018.1.1. 이후 성립분)

---

04

차감 납부할 세액

- 확정신고와 납부 **지방세법 제103조의23**
- 수정신고 **지방세법 제103조의24**

##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?

## 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”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하세요!

### ■ 근거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9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0

### ■ 적용대상

-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,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 
 ※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(수정신고 제외)

### ■ 차감액

-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

### ■ 차감방법

-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

$$\text{법인세 과세표준} - \text{외국법인세액} = \text{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}$$

※ 당해연도 모두 차감하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향후 15년 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

### ■ 제출서류

-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3호의12서식(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)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
 ※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, 부표 5의3 등 첨부서류 포함

### ■ 문의사항

- 관할 시·군 세무부서에 문의

## 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은 이렇게!!

- 총부담세액 > 기납부세액 :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

**사례**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4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지 C시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4,000원
기납부세액	총액 4,000원		
	안분	2,800원	
차감납부할세액	4,200원	1,800원	

- 총부담세액 < 기납부세액 : 총부담세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, 초과한 금액은 본점 가산

**사례**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31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지 C시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	
	A(70%)	B(30%)	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	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31,000원	
기납부세액	총액 31,000원			
	안분대상액 10,000원 (총부담세액)			
	안분	7,000원		3,000원
	본점가산 (=환급)	21,000원 (31,000원 - 10,000원)		
소계	28,000원	3,000원		
차감납부할세액	-21,000	0		

